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소기업도 해당)
-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필수) 통합위임장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온라인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온라인
	①-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④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④-③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2. 확인지급 절차 ·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소기업도 해당)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

① (대상여부 확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참고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 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참고3)

3.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차액지급 산출방식 예시】

- 상황
 - 甲은 사업체 A와 B를 보유, 신속지급시 A는 800만원, B는 600만원으로 책정
 - 甲은 신속지급으로 A와 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①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 100%) + (B)(600만원 × 50%)]
→ **1,610만원** [(C)(1,000만원 × 100%) + (A)(800만원 × 50%) + (B)(700만원 × 30%)]
-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체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참고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400억원 이하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

참고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옥탕업
	영화관 운영업		마사지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참고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필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 1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2

<제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3

해당 시

<제4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4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5호>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5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2호 서식> 필수(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①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본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계 용자지원, 행정 정보 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필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③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주)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본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계 용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④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을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 해당하는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사유에 "√" 표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_____)

②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	○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해당 시

(지역별 이행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0000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장 명의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